

구분	서류유형		해당 서류	발급 기준	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특별공급신청서, 무주택 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	본인	당사 견본주택 비치 ※인터넷청약(청약홈 www.applyhome.co.kr)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
	○		청약통장순위 (가입) 확인서	본인	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서비스 (www.applyhome.co.kr)에서 발급(국가유공자, 장애인 특별공급 제외) 모집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(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) ※인터넷청약(청약홈 www.applyhome.co.kr)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
	○		인감증명서 인감도장	본인	본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 본인발급 필수(대리발급분은 접수 불가)
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전입일/변동일 / 변동사유 포함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전입일/변동일 / 변동사유 포함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 발급
		○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배우자	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'상세'로 발급)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(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)
		○	출입국사실증명원(상세)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역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
노부모 부양 특별공급	○		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	본인	당사 견본주택 비치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)
	○	피부양 직계비속		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[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변동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]	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청약자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
		○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	○		자녀	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	○	출입국사실증명원(상세)	직계 존비속	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기록대조일 : 존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3년, 비속은 1년) ※직계존속 - 해외에 체류중인(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)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※직계비속 - 만 30세 미만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만 30세 이상 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
대리인 접수	○		인감증명서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인감도장	청약자	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
	○		위임장	청약자	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신분증	대리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

※ 상기 서류 이외에 자격검증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.
 ※ 상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0.06.12)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합니다.